

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

제 안 설 명

의 안 번호	3518
-----------	------

문성호 의원 (국민의힘, 서대문2)

-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과 최윤희·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 성 호 의원입니다.
- 1990년 보도를 통해 알려진 ‘부동산폭력단사건’은 당시 부동산업자였던 오양종이 폭력조직 동화파 수괴 최용섭과 결탁하여 서대문구 등 서울시 소재 건물주들을 향한 협박과 폭력행위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건물 3채를 헐 값에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
- 1990년 11월,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오양종과 최용섭 등 관련 피의자 6명을 공갈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, 특히 오양종은 폭력 청부 혐의로 수배되며 건물주를 협박해 건물을 포기하게 만든 공갈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,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오양종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- 해당 부동산 갈취가 불법적인 범죄수익이었음에도 ‘범죄수익은닉규제법’은

이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결과로 오양종과 그 일당은 기존 건물주의 미성년 자녀를 폭행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천억 재산을 불려 손자까지 배부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

- 오양종과 그 일당의 행위와 같이 조직 폭력을 동원해 미성년 자녀를 감금·폭행 하는 등 끔찍한 협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소송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국가적 경고 차원에서라도 공소시효 폐지 혹은 완화가 필요합니다.
- 또한, 장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위해 직접 나서지 못할 때 제3자가 고발하는 등 해당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